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1051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2. 19 선고 2019나1138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10516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최영현, 이해림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이원하

변론 종결 2019. 3. 7.

판결 선고 2019.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128,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동업계약 체결 및 해지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의사로서 2005. 3. 1.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 공동개업약정서를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

공동개업약정서

본 약정은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가 D병원을 공동으로 개원하여 경영하는데 있어 신의와 성실로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2조(운영방식) D병원의 운영방식은 아래에 규정에 준한다.

1. 공동개원의 형식

공동명의로 D병원을 개설하며, 최초 공동개업자는 갑과 을로 하며, 대표원장은 갑으로 한다.

2. 공동개원의 자본금과 지분

공동개원의 자본금은 병원건물을 포함하여 50:50으로 한다. 건물가액의 부족분은 현금으로 추가 불입한다. 또한 공동개원 시 자본금의 증액이 추가로 요구될 경우도 그 지분을 50:50으로 한다.

4.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료장비 등)의 권리, 미지급금과 유동자산(진료 미수금 등)의 책임과 권한, 제세공과금 및 공동부채의 책임한계, 직원의 임금 등 총 지출과 수입은 갑과 을이 동일하게 50:50으로 한다.

5.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시설의 개보수, 의료물품 구입, 직원의 인사, 추가 공동개업자의 발생 등 D병원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갑과 을이 서로 공동으로 의논하여 결정하며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대표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7. 이익분배와 운영비 부담

공동개원 후 발생하는 모든 이익의 분배와 운영비의 부담은 갑과 을이 50:50으로 한다.

11. 공동개원의 해지

공동개업자 공동개원기간 중에 공동개원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사전 통고를 해야 하며 공동개원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50:50으로 동일하게 지분을 분배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05. 5. 4.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12. 20.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해지계약을 '이 사건 해지계약'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동업해지계약서를 '이 사건 해지계약서'라 한다).

동업해지계약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D병원 동업계약을 해지한다.

1. 동업해지일 : 2012년 12월 31.일

2. 갑은 을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기로 한다.

<위 지분 전부를 병원 운영 및 병원 관련 부동산, 병원 관련 예금, 보험 등을 포함한다.>

3. 갑은 을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을에게 금 3억 원과 E 회원권을 을에게 지불한다.

<지불방법: 금 2억 원은 2012. 12. 31.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13. 12. 31.까지, 12회 분할하여 지급함>

4. 범위 : D병원과 관련한 일체의 자산과 부채(외상매입금, 미지급금, 퇴직금, 지급어음, 차입금, 예수금, 리스료 등) 등을 갑 명의로 이전, 갑이 책임지며 기타 을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D병원 관련된 소유 재산 모두를 포함한다.

5. 향후 발생하는 D병원과 관련된 각종 제세공과금(국세, 지방세 등)은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동업

당시 발생한 각종 제세공과금도 소급하여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국세 및 지방세 등 환급금 발생 시 을의 환급금도 갑의 것으로 한다.

6. 을은 갑의 명의로 이전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7. 을은 동일업종(병원, 의원 등)으로 통영, 고성, 거제에서 24개월 이내에 개원 및 취업하지 아니한다.

<상기 항목 7을 위반 시 을은 갑에게 3억 원에 대한 2배를 배상해야 한다.>

8. 을이 부담할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세는 갑이 부담한다.

나. 병원운영 관련 원고의 형사처벌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범죄사실로 2015. 12. 7. 이 법원에서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15.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2. 7. 선고 2015고정485 판결).

1. 피고인 A(원고, 이하 같다)

누구든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아서 아니 되고, 피고인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D병원의 원장인바, 근로복지공단에 식당 운영 현황과 치료용 산소 구입 대금에 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산재보험금을 과다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식대 가산 관련

피고인은 2006. 6. 1.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위 병원에서 식당을 직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직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류를, 2012. 9. 1.부터 2014. 3. 17.까지 사이에 조리사와 영양사가 위 식당에 각 1명씩 근무하고 있음에도 각 2명씩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식당 운영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2007. 7.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총 82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 항목 중 식대 가산금에 대한 산재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794,1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나. 산소 실거래가 관련

피고인은 2010. 5. 20.부터 2014. 3.17.까지 사이에 위 병원의 실제 산소 구입 대금은 54,925,000원이었음에도 산소 구입대금이 309,823,349원이라는 취지의 허위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산소 구입 대금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2010. 6.경부터 2014. 4.경 사이에 총 47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제비 항목 중 산소 구입대금에 대한 산재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572,1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등

1) 근로복지공단은 2014. 8.경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 등이 예정되어 있음을 통지하고, 2014. 11. 19.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납입고지서를 보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6. 1. 22.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부당이득금 합계 44,380,150원을 납부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4. 1.경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금액 410,938,570원의 환수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6. 12. 1.까지 진료비 청구분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금액 410,938,570원을 납부하였다.

3) 보건복지부는 2016. 11. 21. 이 사건 병원이 약제비와 영양사·조리사 가산료를 과다하게 청구한 부당금액 총액이 86,502,170원이므로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위 부당금액의 3배인 259,506,510원($= 86,502,170 \times 3$)을 징수할 예정임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위 액수 중 동업기간에 발생한 부당금액은 7,897,178원이고 이 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23,691,534원($= 7,897,178 \times 3$)이다(이하 원고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돈을 '이 사건 각 환수금'이라 하고, 보건복지부에 납부할 과징금을 '이 사건 과징금'이라 한다).

라. 피고의 보험 가입 및 환급금 수령

한편, 피고는 2005.경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각 피고로 하여 F조합 생명보험(플러스정기공제)에 가입하고 2005. 10. 17.부터 2010. 8. 16.까지 보험료 합계 20,929,275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G조합 H)에서 매달 자동이체하였다. 피고는 2015. 9. 21. I조합에서 만기환급금 15,623,103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10, 12, 13, 18호증, 을 제1호증의 7, 이 법원의 I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환수금과 과징금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해지계약만으로 이 사건 각 환수금과 과징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환수금 및 과징금의 각 1/2인 239,505,127원[=(부당이득금 44,380,150원 +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액 410,938,570원 + 동업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 23,691,534원) × 1/2]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 G조합 계좌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 하여 만기환급금 15,623,103원을 임의로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환급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서에 향후 원고가 이 사건 병원과 관련된 일체의 부채와 제세공과금을 책임지기로 명시하여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이체하였다거나 만기환급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각 환수금 및 과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이 부분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각 환수금 및 과징금까지

포함하여 병원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4항, 5항의 해석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판결 등 참조).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2)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지계약서 제4, 5항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이 사건 각 환수금 및 과징금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하는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해지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일체의 부채를 책임지고(제4항), 향후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이 그 발생 원인이 동업기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소급하여 책임진다(제5항)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환수금 및 과징금은 원고와 피고의 동업기간 중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계약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채 또는 제세공과금의 통상적인 의미 범주에 포섭된다.

나) 원고는 동업을 시작하고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을 맡아 경영에 관하여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였다(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2조 제1항, 5항 등 참조).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병원의 재정상 어려움 내지는 운영방식과 관련된 문제로 이 사건 해지계약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는 현재 통영시 L빌딩 2층에서 M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병원과 관련된 문제를 중국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건 해지계약 체결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환수금 및 과징금 역시 위 계약서에 언급된 부채 또는 제세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특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 당시에 향후 이 사건 각 환수금 및 과징금이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2015. 6. 17. 검찰에서 '2012. 8.경 이 사건 병원의 식당을 위탁방식에서 직영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당시 누군가가 위법 사실을 제보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병원을 조사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 전부터 병원의 운영상 위법사항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식당의 운영방식을 다소 변경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07. 12. 5.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산소 재료대와 진료비 부당청구 등을 적발하고 개선명령(경고)처분을 하였고, 2008. 3. 11.경 진료제한 3개월의 처분을 내리기도 하였다.

③ 증인 K은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비율이 매우 높았고, 증인이 근무한 2년 동안 총 6번의 요양급여비용 및 산재보험급여비용 삭감 또는 환수처분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다른 병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다', '허위 또는 부당청구가 있으면 환수처분이 뒤따른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④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장으로서 이 사건 해지계약서의 작성을 보조한 증인 J은 '피고가 식당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넣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였습니다', '동업계약을 해지할 때 식당 위법사실에 대해서 넣고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식당 얘기가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해지계약서 문구를 작성하면서 병원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적 제재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공동개원 해지 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50:50으로 동일하게 지분을 분배하여야 하나, 원고와 피고는 위 방식으로 지분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병원 재산인 부동산과 예금, 보험을 모두 원고 명의로 이전하고 피고는 현금 3억 원과 E 회원권만 받기로 하였다. 즉 피고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재무관련 자료를 내세우며 피고가 받은 3억 원 및 E 회원권은 병원의 당시 재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해지계약 당시 병원의 재정과 부동산, 예금,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피고가 받을 액수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2조 제8항, 제13의 2)항에서 순이익 10%를 매달 공동개원보험보장금으로 적립하고, 공동개원계약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적립금의 75%를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해지계약 당시 공동개원보장금을 분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⑦ 피고는 원고와 달리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따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원고는 검찰에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자신이 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다. 소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각 환수금 및 과징금까지 포함하여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채무를 종국적으로 정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환수금 및 과징금의 각 1/2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가 F조합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2005. 10. 17.부터 2010. 8. 16.까지 보험료 합계 20,929,275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G조합 H)에서 매달 자동이체되는 방식으로 납부한 사실, 피고가 2015. 9. 21. 보험환급금 15,623,103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보험료가 자동이체된 시기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을 하던 시기로서 피고가 약 5년의 장기간 동안 임의로 원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금원을 이체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지계약서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만큼,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가 모르게 원고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지급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험환급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추가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거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희철

판사윤준석

판사김희수